

사이버 공간에 날아다니는 권리를 조심하라

디자인권, 저작권과 초상권에 눈을 뜨는 사람들

담
하
연



바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1996-현재)
한국상표학회 회장(1999-2000)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2000-2001)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2-현재)
아시아변리사회(APAA)본부 상표위원회 위원장
(2003-현재)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현재)
NAF (미국중재연맹) 위원 (2006-현재)

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두 눈을 부릅 뜨고 있다

요즘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디자인권,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블로그,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운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저작권자들이 권리 보호 측면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예전과 다르게 함부로 도용당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 회한 것이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법적 시비에 휘말려 거액을 물어 줘야 할 지도 모른다. 상업적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던 [디자인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집중 소개한다.

방심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 관련 법률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던 D방직은 어느 날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자신들이 언젠가 사용한 직물 디자인이 미국 기업의 응용 미술 작품을 모방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회사측은 남의 특허권을 조금도 침해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적도 없었으므로 즉시 항고했다.

[직물 판매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

업체가 제시하는 도안지에 따라 직물을 제작했을 뿐이다. 이 도안이 타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물이란 사실을 인식한 것도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알고 보니 문제의 도안은 미국 기업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응용미술작품이었다. 단순히 거래처의 부탁을 받아 염직물에 도안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된 대한방직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D방직이 승리했다. 근본적으로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도안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응용 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고,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어야 창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냉엄하기 짝이 없는 특허 법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대량 생산을 위해 산업상의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한 마디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이중 보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기업은 문제의 직물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하지 않은 채 저작권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받고도 등록에 잘못이 있어 패소한 것이다. 응용 미술은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직물 디자인도 전형적인 저작물로 오해한 나머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실

수였다.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로 이처럼 특허 관련 법률은 냉엄하다. 눈곱만큼의 방심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 미술작품 등도 보호대상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 미술 작품 등의 저작물도 보호 대상이 된다. 미술 저작물이란 형상이나 색채를 통해 미적 감각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응용 미술이란 순수 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말한다. 문제의 도안 역시 직물 염색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응용미술품의 일종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응용미술품에는 ①미술 공예품이나 장신구처럼 그 자체가 실용품인 경우 ②가구에 부착된 조각같이 실용품에 결합된 경우 ③문진의 모형 등 양산될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④직물의 염직 도안같이 실용품의 모양으로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응용 미술이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진출하는 최근에는 디자인권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으로까지 이중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산업용 응용 디자인도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이중 보호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글꼴(서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 가능

우리 저작권법에는 글꼴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인쇄용 글꼴 도안처럼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의 글꼴 도안은 미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라도 그 자체 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부족하다. 실용적인 기능 외에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가 있어야 창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컴퓨터용 글꼴은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 용지에 출력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그러나 글꼴은 프로그램 내용보다 출력물인 글자꼴의 모양을 중시하는 특성과 글꼴 출력물을 이용한 개작이 쉬워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글꼴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대상 가능

그 동안 글꼴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단 복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글꼴 개발자들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에도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그러던차에 1995년 6월 서울시스템 등 6개 컴퓨터용 글꼴 개발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N사가 전자 출판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면서 6개 사의 글꼴 100여 종을 무단 복제 및 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6개 사는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N사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글꼴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판례였다. 이로써 지식재산권으로 인

정받지 못하던 글꼴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꼽히는 글꼴이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글자체’가 디자인 등록 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새로운 글자체를 개발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하여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7. 1 부터 발효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글자체를 디자인 등록 대상인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은 그 정의 규정에서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항), ‘글자체’를 디자인 등록 대상인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 1의 2)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글자체의 사용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과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 즉,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①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② 위 ①항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예 작품의 서체(글꼴) 일부 도용 - 저작권 침해 판결

태흥영화사와 서예가 여태명 교수 사이에 벌어진 글꼴 저작권 침해 싸움도 서예가의 승소로 마감되었다. 태흥영화사는 사전 허락 없이 영화 <축제>의 타이틀로 여태명 교수의 글씨를 도용했다가 글자 한 자당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책표지의 소설 제목으로 [축제]의 서체를 도용한 출판사에도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서 글꼴 도용의 주범은 영화사측으로부터 포스터와 영화 타이틀 디자인을 의뢰받은 디자인 제작사였다. 마땅한 로고가 없어 고민하던 중 1994년 5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 청년 작가 초대전에 출품된 여 교수의 창작 글꼴을 도록(圖錄)에서 보고 글꼴이 독특해 컴퓨터로 뽑아 짜깁기했다고 한다. 이제는 글꼴에서도 작가의 창작권과 저작인격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 심각하다

저작권보호법으로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사진 이미지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앞으로 배경음악은 허락한 곡만 사용해야 한다.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 조치한다고 한다.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요즘 사진작가 이**씨의 사진들이 사이버 공간에 많이 떠돈다. 이 사람의 작품들 중에 풍경, 바다, 꽃 등이 적지 않다. 이 사람이 사이버 수색대를 조직하여 웹 상에 자기 작품 사진을 사용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다. 벌써 고소당한 사람들이 있어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다.

이 수색대가 사이버 카페도 조사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받았다. 사진 한 장당 1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한다. 아직은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은 듯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이란다. 사이버 카페의 매니저나 스태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관련 단속 2006년 4월 16일 개시

사진, 음악, 이미지 등을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오는 4월 16일부터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앞으로 게시물 게재 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카페, 개인 홈페이지, 플래닛, 블로그 등에 관계없이 함부로 퍼다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요즘 사진작가의 고소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신중 직업인 [카파라치]들은

보상금을 노리면서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페이지 등을 돌아다닌다.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 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진작가가 한두 명이 아니므로 작가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를 챙기는 사람들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물론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질권(담보의 한 종류)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 제한 등은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사항들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영국 런던에서는 거리의 악사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르는 곳이 있다. 수입금액의 일정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기 위해 음악저작권협회를 찾아가는 것이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남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대중가요 작사가 중에는 노래방 덕분에 넉넉한 저작권료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다양한 저작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는 현실에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과 방송국의 저작권 침해

백화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이용해 음악을 방송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당연히 저작재산권 침해다.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1983년 방송 극작가 16명이 KBS를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것은 저 권리를 스스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KBS측이 TV 드라마로 1차 방영된 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하면서 2차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저작권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승소를 선고하면서 [TV 드라마를 TV 방영이 아닌 VTR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고들의 극본 사용 승낙의 범위를 넘는 2차 저작물 이용으로서 원고들의 TV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KBS는 이 결정에 따라 녹화 테이프 판매 가격의 10퍼센트를 저작권자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 손해 배상했다.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까지 다툼의 대상

저작권 침해만 신경을 쓰다 보면 초상권에 서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초상권은 일종의 무체(無體) 재산권으로 인격권 보호 측면이 강하다. 자신의 초상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촬영된 인물 사진의 이용 승인권 등이 초상권 시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

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하더라도 초상권자의 사용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명인의 초상을 교과서, 일반 도서, 백과 사전 등에 게재하는 것이나 영화사 등이 영화의 한 장면인 출연자의 초상을 영화 선전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상품 광고에 사용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특정인의 캐릭터와 유사한 경우에도 시비 불러

비록 초상권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수시로 저작 인접권 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배우들이 출연 계약을 맺은 뒤 배우의 초상이 다른 광고에 사용되거나 제삼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SBS 드라마로 일약 스타가 된 텔런트 C씨는 [내 얼굴값을 내놓으라]고 호통쳤다. 계약 회사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실림으로써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앙 일간지에 낸 모 계약 회사의 광고에서 수염이 텃수룩하고 머리에 두건을 쓴 남자의 인물 스케치가 실리자, C씨는 [사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그림은 누가 봐도 임꺽정이고 정홍채]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역시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중에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인물을 낸 것은 명백히 초상권 침해]라며 계약회사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돼야 초상권 침해

1988년 광고회사 S는 백화점의 신문 광고에 인기 텔런트 K의 사진만을 싣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 S사가 텔런트 K의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를 만들어 신문 광고와 전단에 사용하자, 텔런트 K는 사전 승낙 없이 초상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S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 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사회 통념상 광고에 실린 그림이 K라고 곧바로 식별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K의 청구를 기각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인기 텔런트 H는 대기업 L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류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 이외의 잡지 광고에 사용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고 별도의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이 다툼에서 텔런트 K와 달리 텔런트 H는 승소했다. 초상권 사용 승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L사는 H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초상권 침해는 엄청난 손실과 시비를 가져온다

한때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과 응원팀 [붉은 악마]가 누리는 폭발적인 인기 무임 승차하려던 기업들도 곤욕을 치렀

다. 차 감독은 스포츠 용품 메이커 나이키사가 자신의 얼굴과 대표팀의 경기 모습을 담은 광고를 임의로 만들어 방송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가 만들어졌으니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PC통신 축구동호회 [붉은 악마]도 일부 기업에서 사전 허락 없이 회원들의 얼굴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자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렇게 초상권 침해가 시비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10여 개 업체가 붉은 악마를 소재로 한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인기 댄스그룹 H.O.T도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연예잡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1억 5,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무명 시절에 찍은 사진을 유명해진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한 탤런트는 5,80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남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에 무임 승차하려다 큰코 다치는 것처럼 초상권 침해도 엄청난 손실과 시비를 가져온다는 걸 명심하자.

**창작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나가야**

2006년 6월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다고 60여 명의 국내 가수들이 나섰다. 국내 가수들의 음악과 노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올렸다가는 한 곡에 50만 원씩 저작권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들 60여 명의 가수들의 음악과 노래에만

주의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적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

이젠 침해의 제소를 받을까 두려워서 남의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남다른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 이룩한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신적 창작은 더욱 진흥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 혜택도 더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